**2017년 귀속**

**연말정산 안내문**

2017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임∙직원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
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또한 소득∙세액공제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부당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

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차 례

Ⅰ. 2017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3

Ⅱ. 소득·세액공제신청시 유의사항 4

Ⅲ.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6

Ⅳ. 소득ㆍ세액공제 안내 7

1. [인적공제 7](#_TOC_250005)
2. [연금보험료 공제 8](#_TOC_250004)
3. [특별소득공제 8](#_TOC_250003)
4. [그 밖의 소득공제 9](#_TOC_250002)
5. [세액감면 11](#_TOC_250001)
6. [세액공제 11](#_TOC_250000)

Ⅴ. 제출서류 안내 14



Ⅰ. 2017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구 분 | 2016년 | 2017년 |
| 소기업소상공인 공제부금 | ∙공제한도 : 연 300만원  ∙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(2%) 부과 | ∙공제한도 조정   |  |  | | --- | --- | | 사업소득금액(근로소득금액) | 공제한도 | | 4천만원 이하 | 500만원 | |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300만원 | | 1억원 초과 | 200만원 |   ∙중도해지가산세 폐지 |
| 투자조합 등 출자 소득공제 | ∙창투조합 출자 등 대한 소득공제 대상  - 창투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 조합 등에 출자금  (추 가) | ∙창투조합 출자 등 대한 소득공제 대상 추가   * + 창투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금   +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|
|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| ∙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   * + <추 가>   ∙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  * + 신용카드 15%   + 체크카드⋅현금영수증 30%   + 전통시장⋅대중교통 30%   ∙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  * + 연 300만원   ∙적용시기 : ‘16.12.31까지 | ∙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  * + 중고차 구입금액의 10%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 ∙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  * + 신용카드 15%   + 체크카드⋅현금영수증 30%   + 전통시장⋅대중교통 40%   ∙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차등적용   |  |  | | --- | --- | | 총급여액 | 공제한도 | | 7천만원 이하 | 300만원 | |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| 300만원  (2018.01.01. 이후 250만원) | | 1억2천만원 초과 | 200만원 |   ∙적용시기 : ‘18.12.31.까지 |
|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| ∙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   * + 청년, 만 60세 이상자, 장애인   + <추 가> | ∙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   * + 청년, 만 60세 이상자, 장애인   + 경력단절여성(‘17.01.01 이후 재취업부터 적용) |
| 출산·입양세액공제 | ∙세액공제액 : 1명당 30만원 | ∙세액공제액 : 출산입양 자녀가 첫째이면 30만 원, 둘째이면 50만원, 셋째이상이면 70만원 적용 |
| 연금계좌세액공제 | ∙연금저축 공제한도  - 공제한도 : 연 400만원 | ∙연금저축 공제한도 조정  - 공제한도 : 연 400만원(단, 총급여액이 1억2천만 원 초과자 연 300만원) |
| 의료비세액공제 | ∙의료비 세액공제율 : 15% | ∙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 - 난임시술비 : 20%, 이외의 의료비 : 15% |
| 교육비세액공제 | <추 가> | ∙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- 초중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**\***(1인당 30만원 한도)  **\***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, 수학여행 등을 말함.  - 근로자 본인의 든든학자금 대출금 원리금상환액**\***  \* ‘16.12.31 이전 대출금으로 직계존속 등이 기 교육비 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불가. |
| 월세액 세액공제 | ∙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  * +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+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오피스텔 | ∙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* +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 을 체결한 경우   +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오피스텔, 고시원 |



Ⅱ. 소득공제신청시 유의사항

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,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 및 회사 이미지의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구 분 | 소득공제 신청시 주요 확인사항 |
| 인적공제 | * 당해연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새로이 기본공제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 신청 여ㆍ부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ㆍ부를 필히 확인. *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구성원간의 중복공제 불가.   →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* 맞벌이 부부의 유의사항   + 부부가 자녀에 대한 중복으로 공제 신청불가. 또한 자녀에 대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 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도 기본공제신청한 배우자만 공제 신청할 수 있음.   + 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17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신청 가능. *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 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→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ㆍ교육비(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) ㆍ기부금ㆍ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 \* 단, 소득금액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신청 가능. |
| 주택자금공제 | *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 +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불가   +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(개인간 차입금의 경우 1개월) 이내 차입하지 않는 경우 공제불가 *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 -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(’13.12.31. 이전 3억원)을 초과한 주택(2013.12.31.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)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 * +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 +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 +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 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,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 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 * + 사업용 주택(임대주택, 어린이집 등)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 +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 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|

|  |  |
| --- | --- |
| 구 분 | 소득공제 신청시 주요 확인사항 |
| 주택마련저축 | *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(12.31)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 +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 + 연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공제 적용. 단, ‘09.12.31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도 공제받을 수 있음 |
|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| * 형제자매(기본공제대상자 포함)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*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*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하여 공제 불가 |
| 연금계좌 세액공제 | 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- 개인연금저축(연 72만원 한도)은 2000.12.31. 이전 가입분을 말함 |
| 의료비 세액공제 | *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(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) 불가 *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(실손보험금)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.(의료비 지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) |
| 육비 세액공제 | *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불가(대학원은 근로자본인만 가능) *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 *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불가 *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불가 |
| 기부금 세액공제 | *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*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*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불가 *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*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 ✻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, 법인설립허가증 사본,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.  **✻**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단,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‘기부 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’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|
| 월세 세액공제 | *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불가. *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불가 |



Ⅲ.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

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- 비과세소득



(-) 근로소득공제



(-) 인적공제



(-) 연금보험료공제



(-) 특별소득공제

근로소득금액

|  |
| --- |
| 1. 기본공제 2. 추가공제 - 경로우대, 장애인, 부녀자, 한부모가족공제 |
| (1) 국민연금,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보험료 등 |
| 1. 보험료공제 - 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. 주택자금공제 - 주택임차차입금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. 기부금(이월분) - ‘13년 이전 지출분으로 이월된 기부금 |
| (1) 개인연금저축공제 (2) 소기업･소상공인저축공제  (3) 주택마련저축공제 (4)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(5)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(6)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소득공제  (6)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(7)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|

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항목들의 공제금액의 합계액 - 연 2,500만원



(-) 그 밖의 소득공제



(+)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

근로소득 과세표준



(×) 기본세율

산출세액





(-) 세액감면

(2)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

(3) 조세조약 외국인교수․교사 세액감면

(1) 외국인기술자세액감면



(-) 세액공제

(6)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

(7) 외국납부세액공제 (8) 월세 세액공제

(5) 납세조합공제

1. 근로소득세액공제
2. 자녀세액공제(공제대상자녀･6세이하자녀･출산입양)
3. 연금계좌세액공제
4. 특별세액공제(보험료･의료비･교육비･기부금)

결정세액





(-) 기납부세액

납부 또는 환급세액

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액





Ⅳ. 소득공제 안내



# 인적공제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 목 | |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| | | | | | | | | | |
| 인 적 공 제 | 기본공제 |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본인,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**1인당 150만원을 공제** | | | | | | | | | | |
| 공제대상자 | | | | 공제금액 | | 기본공제요건 | | | | |
| 생계요건 | | 나이요건 | | 소득금액요건 |
| 근로자 본인 | | | | 1명당 :  150만원 | | - | | - | |  |
| 배우자 | | | | - | | - | |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) |
| 기타 부양 가족 | 직계비속․입양자 | | | - | | 만 20세 이하 | |
| 직계존속 | | |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동거 | | 만 60세 이상 | |
| 형제자매 | | | 만 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 | |
| 기초수급자 | | | - | |
| 위탁아동 | | | 만 18세 미만 | |
| 주1 장애인의 경우에는 “나이제한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주2 학업ㆍ취업ㆍ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(따로 사는 경우)도 동거가족으로 봄  ♣ **“나이요건”** 적용기준 | | | | | | | | | | |
| 만 20세 이하 | | | 만 60세 이상 | | | | 만 18세 미만 | | 만 70세 이상 | |
| 1997.01.01 이후 | | | 1957.12.31 이전 | | | | 1999.01.02 이후 | | 1947.12.31 이전 | |
| 추가공제 | DRW00002ef42791 다음의 하나를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각각의 추가공제를 적용 | | | | | | | | | | |
| 추가공제 | | 공제금액 | | | 공제요건 | | | | | |
| 경로우대자공제 | | 1명당 100만원 | | | 만 70세(1947.12.31 이전 출생) 이상 | | | | | |
| 장애인공제 | | 1명당 200만원 | | | 장애인, 상이자,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주1 | | | | | |
| 부녀자공제주2 | | 연 50만원 | | | 총급여액이 41,470,588원(근로소득금액 3천만원) 이하인 여성 근로 자로서,   * 배우자(소득 유ㆍ무 불문)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*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  세대주 | | | | | |
| 한부모가족 공제주2 | | 연 100만원 | | |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 부양하는 경우 | | | | | |
| 주1 암, 중풍, 백혈병, 치매 등의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2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(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) | | | | | | | | | | |





# 연금보험료 공제

* +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한 연금보험료의 경우 기재할 필요는 없음. 다만, 별도로 납입한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할 것.
  + 올해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 전(前)회사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“종(전)근무지의 연금보 험료”란에 기재할 것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 목 |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| | |
| 연금보험료 공제 |  | | |
| 구분 | 공제금액 | 공제대상 |
| 국민연금보험료 | 전액 |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주1 |
| 공무원연금보험료 등 | 전액 |
| 주1 2017.01.01 ~ 12.31.까지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등(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가능) | | |

1. 특별소득공제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 목 | |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| | | |
| 보험료 공제 | | 올해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 전( 前 )회사에서 납부한 건강ㆍ노인장기요양ㆍ고용보 험료는 “종(전)근무지”란에 구분하여 기재할 것. | | | |
| 구분 | | 공제금액 | 공제대상 |
| 건강･노인장기･고용보험료 | | 전액 |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|
| ※ 근무기간 중에 별도로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할 것. | | | |
| 주 택 자 금 공 제 | 주택임차차 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| DRW00002ef42793**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**주1**)**인 근로자 본인이 **국민주택규모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**하기 위해 아래의 공제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 금(전세보증금 등)의 원리금상환액의 40%를 소득공제 | | | |
|  | 금융기관 차입금 | | 개인간 차입금 |
| 공제요건 | *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․후 3개월 이내 차입주2 *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| | *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*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․후 1개월 이내 차입주2 * 기획재정부령 이자율(1.6%)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|
| 공제금액 | 원리금상환액의 40% (연 300만원 한도) | | |
| 주1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금ㆍ보증금 등을 차입한 경우를 말함.  주2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한 경우,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차입금의 경우에  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.(‘14.02.21 이후분부터 적용)   * 임대차계약을 연장(갱신)하는 경우 : 전세계약 연장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․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 *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: 이사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․후 3개월   이내 차입한 차입금 | | | |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 목 | |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| | | | | | |
| 주 택 자 금 공 제 |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 제 |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)인 경우로서,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. | | | | | | |
| 구분 | | 2013년 이전 차입한 차입금 | | | 2014년 이후 차입한 차입금 | |
| 공제 요건 | 주택 | *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일 것 * 국민주택규모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가 3억원 이하일 것. *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로서, 연중 2 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이하 일 것. | | | *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 일 것 *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 가가 4억원 이하일 것. *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 일 것. | |
| 차입금 | *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(‘03.12.31. 이전 차입금 및 ’15.01.01. 이후 차입금(고 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차입금)으로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포함) * 소유권(또는 보존)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*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일 것. | | | | |
| **공제한도** | | | | | | |
| 구 분 | | | | 상환기간 또는 상환유형 | | 공제한도 |
| 2015.01.01 이후  차입한 차입금 | | | 15년 이상 |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| | 연 1,800만원 |
|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| | 연 1,500만원 |
| 기타 대출 | | 연 500만원 |
| 10년 이상 |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| | 연 300만원 |
| 2012.01.01 이후 차입한 차입금 | | | |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| | 연 1,500만원 |
| 기타 대출 | | 연 500만원 |
| 2011.12.31 이전 차입한 차입금 | | | | 10년 이상 15년 미만(‘03.12.31. 이전 차입금) | | 연 600만원 |
| 15년 이상 30년 미만 | | 연 1,000만원 |
| 30년 이상 | | 연 1,500만원 |
| **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**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주택분양권, 주택입주권) 로서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“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” 조 건으로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| | | | | | |



4. 그 밖의 소득공제

○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기재

|  |  |
| --- | --- |
| 항 목 |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|
| 개인연금저축공제 | * 2000.12.31.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, 납입금액의 40%(연 72만원 한도)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|
| 소기업․  소상공인 공제부금 | *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(공제한도 : 200만원~500만원)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 ※ 2016.01.01. 이후 가입분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만 공제가능. |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 목 |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| | | | | | | | | |
| 주택마련  저축공제 | 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(연 240만원 한도✻)의 40%를 소득공제 | | | | | | | | | |
| 주택마련저축 | | 공제요건 | | | 납입한도 | | | | 공제금액 |
| 주택청약종합저축 | | •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**주1**의 세대주 | | | 연 240만원(120만원**주2**) | | | | 납입금액의 40%  (연 300만원 한도) |
| 청약저축 | |
| **주1** ’09.12.31.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전용면적 85㎡) 1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.  **주2** ’14.12.31.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한도 120만원 적용. 단 ’15.01.01. 이후 가입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. | | | | | | | | | |
| 투자조합출자  등 소득공제 | DRW00002ef427ae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아래의 공제율(10% ~ 100%)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. | | | | | | | | | |
| 대 상 | | | | | | 공제율 | | 공제한도 | |
| 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ㆍ벤처기업투자신탁ㆍ사모펀드(PEF) | | | | | | 10% | | 소득금액의 50% | |
| •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| | | | 1,500만원 이하 | | 100% | |
| 5,000만원 이하 | | 50% | |
| 5,000만원 초과 | | 30% | |
|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|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(나이제한 없음)의 배우자, 직계비속․입양자,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.(**형제자매 등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**)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(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의 합계액) 중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. | | | | | | | | | |
| 구분 | | | 공제금액 | | | | 공제한도 | | |
| ①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| | | •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  |  | | --- | |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– 총급여액×25%) × 공제율(15%,30%,40%)**주1** |   **주1** 신용카드 : 15%,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: 30%, 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 : 40% | | | | 연 300만원(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)과 총급액의 20% 중 작은 금액 | | |
| ②추가 공제 | 전통시장  사용분 | | 작은금액【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초과금액, 전통시장사용분 × 40%】 | | | | 연 100만원 | | |
| 대중교통  이용분 | | 작은금액【(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초과금액 – 전통시장사용분 추가공제금액), 대중교통 이용분 × 40%】 | | | | 연 100만원 | | |
| 우리사주조합출연금 |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(연 400만원 한도) | | | | | | | | | |
| 고용유지중소기업  근로자소득공제 |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% 공제(연 1,000만원 한도)  - 소득공제금액 = (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-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) × 50%  ※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성격의 금액을 말함 | | | | | | | | | |
| 장기집합투자증권  저축 소득공제 |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.12.31.까지 가입하는 경우,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(납입한도 600만원)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| | | | | | | | | |
| 공제요건 | | | | | 공제금액 | | | | |
| •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**주1** | | | | | 납입액의 40%(연 240만원 한도) | | | | |
| **주1**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 신고대상 소득(예) : 사업소득 등만 있는 자 및 일용근로자 제외 | | | | | | | | | |

5.  세액감면

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 목 | |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| | | |
| 세 액 감 면 |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|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연 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2년간 근로소득  세의 50% 세액감면 적용. | | | |
|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|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(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~ 29세), 만 60세 이상자, 장애 인,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액을 감면. | | | |
| 구 분 | 취업(재취업)시기 | | |
| 2012.01.01 ~ 2013.12.31 | 2014.01.01 ~ 2015.12.31 | 2016.01.01. 이후 |
| 감면대상자 | *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29 세 이하 청년주1 | *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29세 이하 청년주1 *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자 * 장애인 * 경력단절여성(2017.01.01. 이후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) | |
| 감면세액 | 근로소득세액의 100% | 근로소득세액의 50% | 근로소득세액의 70%  (감면세액 한도 : 연 150만원) |
| 주1 만 29세 이하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,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군복무기간을 뺀 연령으로 계산. | | | |
| 조세조약에  따른 교직원  세액감면 |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제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가된 교육기관(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 따른 학 교)에 초청되어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세액의 100% 면세. | | | |







# 6. 세액공제

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 목 | |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| | | | | |
| 세  액  공  제 | 자녀세액공제 | 근로자 본인의 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)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. | | | | | |
| 구 분 | | 세액공제액 | | | |
| 공제대상 자녀 | | *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: 1명당 15만원 *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: 30만원 ＋ (자녀수 – 2명) × 30만원 | | | |
| 6세 이하 | | *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: (6세이하 자녀수 - 1명) × 15만원 | | | |
| 출산ㆍ입양자녀 | | * 출산ㆍ입양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, 둘째인 경우 50만원, 셋째이상인 경 우 70만원. | | | |
| 연금계좌 세액공제 |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%(총급여액이 5,500만원 이하 15%)에 해 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| | | | | |
| 구 분 | | | | 공제한도 | 세액공제액 |
| * 연금계좌 | 퇴직연금 | | DC와 개인형 퇴직연금(IRP) | 연 700만원주1 | 한도 내 납입액  × 12%(15%) |
| 과학기술인공제회 |
| 연금저축 | | |
| 주1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(1억2천만원 초과자는 연300만원)을 한도로 함 | | | | | |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 | | 목 |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| | | | | | | | |
| 세  액  공  제 | 특  별  세  액  공  제 |  |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| | | | | | | | |
|  | 공제요건 | | | | | | | 세액공제액 | |
| 보험료 | 보장성보험료주1 | | | *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보험료 | | | | 납입액(연 100만원  한도)의 12% | |
| 장애인전용보험료주2 | | | *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| | | | 납입액(연 100만원  한도)의 15% | |
|  | 주1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“보험료공제대상”으로 표시된 보험(종신보험, 상해보험, 자동차보험 등)  주2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“장애인전용보험”으로 표시된 보험 | | | | | | | | |
|  |
|  |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, 부양가족(나이, 소득금액요건 적용안함)에 지출한 다음의 의료비로서 **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**에 대해서만 공제적용 | | | | | | | | |
|  |
|  | 공제대상자 | | 공제대상 의료비 | | | | 공제한도 | | 세액공제액 |
| 의료비 | 난임시술비 | | * 치료․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주2 * 치료․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 *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*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**(1명당 50만원 한도)** * 보청기 구입비용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․임차비용 *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* 난임시술비 | | | | 한도 없음 | |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× 15%(난임  시술비 20%) |
| 근로자 본인  만 65세 이상자주1  장애인 | |
| 그 밖의 부양가족 | | 연 700만원 | |
|  | 주1 만 65세 이상자는 1952.12.31.이전 출생자를 말함.  주2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(보약 등) 구입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 | | | | | | | | |
|  |
|  |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**(나이제한 없음)**인 배우자, 직계비속ㆍ입양자, 형제자  매,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| | | | | | | | |
|  |
|  | 공제대상자 | | | | 공제대상 의료비 | 공제한도 | | 세액공제액 | |
|  | 일 반  교육비 | 취학전 아동 | | | * 어린이집･유치원･학원･체육시설 수업료, 급식비,   방과후과정 수업료(특별활동비 및 도서구입비 포함)   * 초･중･고등학생 등록금, 입학금, 급식비, 교과서 대금, 방과후학교 수업료(도서구입비 포함) * 중･고생 교복․체육복 구입비(1명당 50만원 한도) * 초･중･고생 체험학습비(1명당 30만원 한도) * 원격대학･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및 대학생의 등록금, 입학금 등 * 우리나라 유치원, 초․중․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해 당하는 해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주1 * 다음의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에 한하여 적용   + 대학원, 시간제과정,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 +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주3 | 1명당  3백만원 | |  | |
| 초․중․고등학생 | | |
| 대학생 | | | 1명당  9백만원 | |
|  | | |  | |
|  | 근로자본인 | | | 전액공제 | |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× 15% | |
| 교육비 |  | | |  | |  | |
|  |  | | |  | |  | |
|  |  | | |  | |  | |
|  |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주2 | | | | *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․장애아동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출한 교육비 | 전액공제 | |  | |
|  | |  |  | | --- | --- | | 구분 국외교육비 공제 여부 | | |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|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가능 | | 중학생 이하인 경우 |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교육비 공제가능.  -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거나, 부모 모두와 출국하여 동 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녀가 유학중인 경우 |   주1 연말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유학 중인 자녀의 국외교육비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음.  주2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. 단,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 -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및 소득금액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| | | | | | | | |
|  |
|  |





|  |  |
| --- | --- |
| 구분 교육비 신청시기 및 공제신청 가능 여부 | |
| 2016.12.31. 이전 학자금 대출분 | *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: 공제신청 불가 *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: 공제신청 가능 |
| 2017.01.01. 이후 학자금 대출분 |  취업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임.  (재학 중에 동 학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교육비 신청 불가) |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 목 | | |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| | | | | |
| 세  액  공  제 | 특  별  세  액  공  제 | 교육비 | 주3 근로자 본인이 대학교 재학 중에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로서 동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**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공제신청할 것**. | | | | | |
| 기부금 |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**(나이제한 없음)**인 배우자, 직계비속ㆍ입양자, **직계존속, 형제자매** 등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 -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| | | | | |
| 구분 | | 기부  코드 | 공제한도 | | 세액공제액 |
| ① 정치자금기부금주1 | | 20 | 근로소득금액 | | 공제한도 내 기부금×  15%(25%,30%)주2 |
| ② 법정기부금 | | 10 | (근로소득금액 － ①) | |
|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| | 42 | (근로소득금액 － ① － ②) × 30% | |
| ④ 지 정 기부금 | 종교단체외 | 40 | 소득금액 × 10% ＋ Min 〔 소득금액×10%,  종교단체외 기부금〕  \* 소득금액 = (근로소득금액 － ① － ② － ③)  \*\* 종교단체기부금의 공제금액은 소득금액의 10%  를 초과할 수 없음. | |
| 종교단체 | 41 |
| 주1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 이하는 해당 금액에 110분의100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함.  주2 정치자금기부금 : 3천만원 이하 15%, 3천만원 초과 25%.  법정ㆍ우리사주조합ㆍ지정기부금 : 2천만원이하 15%, 2천만원 초과 30%. 단, ’14년~’15년 이월기 부금은 3천만원이하 15%, 3천만원 초과 25% 적용. | | | | | |
|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| | 1995.11.1～1997.12.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 대출금 이자상환액의 30%를 세액공제 | | | | | |
| 납세조합공제 | |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산출세액의 10% 공제 | | | | | |
| 외국납부 세액공제 | | 해외 파견 등으로 파견국가에 납부한 세액(외국납부세액)주1을 산출세액에서 공제.  주1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함.  -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= 산출세액 × (국외근로소득금액\* ÷ 근로소득금액)  \* 국외근로 제공대가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임 | | | | | |
| 월세 세액공제 | |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)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. | | | | | |
| 공제요건 | | | | 세액공제액 | |
| *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자일 것 *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| | | | 월세액(연 750만원 한도) × 10% | |



Ⅴ. 제출서류 안내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목 | 제출서류 | | | | 발급기관 |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|
| 근로자 본인 | 이중근무자 | | * 근무지(변동)신고서 *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* 기부금명세서 | | 종된 근무지 회사 |  |
| 재취업자 | | *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* 전직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* 기부금명세서 | | 전 직장 |
| 외국인근로자 | | * 외국인등록사실증명 | |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 ․ 군 ․  구 ․ 청 |
| 인적공제 | 공통서류 | | * 주민등록표등본 * 가족관계증명원 : 주거를 함께하 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| | 정부24 (www.gov.kr) 또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efamily.scourt.go.kr)  또는 읍 ․ 면 ․ 동 주민센터 |  |
| 일시퇴거자 | | *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| | 본인이 직접 작성 |  |
| * 본래의 주소지 및 퇴거지의 주   민등록표등본 | | 정부24 (www.gov.kr)  또는 읍 ․ 면 ․ 동 주민센터 |
| * 재학 ․ 요양 ․ 재직증명서 등 | | 관련기관 |
| 입양자 | | * 입양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원   (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 가한 경우에 한함) | |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efamily.scourt.go.kr)  또는 읍․면․동 주민센터 |  |
| 기초수급자 | | * 수급자증명서 | | 정부24 (www.gov.kr)  또는 읍 ․ 면 ․ 동 주민센터 |  |
| 위탁아동 | | * 가정위탁보호확인서 | | 시 ․ 군 ․ 구청 아동복지과 |  |
| 장 애 인 |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| | 장애인증명서 또는  장애인등록증(수첩․ 복지카드) 사본 | 정부24 (www.gov.kr)  또는 읍 ․ 면 ․ 동 주민센터 |  |
| 국가유공자등예우 등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등 | | 상이증명서 | 국가보훈처 |
| 항시치료를 요하는  중증환자 | | 장애인증명서 | 해당 의료기관 |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 목 | | | 제출서류 | | 발급기관 |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|
| 주 택 자 금 공 제 | 공통서류 | | * 주민등록표등본 | | 정부24 (www.gov.kr)  또는 읍 ․ 면 ․ 동 주민센터 |  |
| 주 택 임 차 차 입 금 | 금융기관 | * 주택자금상환증명서 | | 해당 금융기관 | ○ |
| 개인간  (거주자간) | * 월세액·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| | 본인이 직접 작성 |  |
| * 주택자금상환증명서 * 임대차계약서 사본 *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*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증명서류 | | 근로자 본인 |  |
| 연장(갱신) 또는 이사의  경우 | * 연장(갱신) 또는 이사 전 임대차계약서 | | 근로자 본인 |  |
|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| | -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| | 해당 금융기관 | ○ |
| - 건물등기부등본 | |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|  |
| -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 격확인서 | |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 리미(www.realtyprice..kr) 또 는 시 ․ 군 ․ 구청 |  |
| -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(대환 또는 상환기간 연장 등에 한함) | | 해당 금융기관 |  |
| - 분양권계약서 사본(분양권에 한함) | | 분양회사 |  |
| 개인연금저축 | | | *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| | 해당 금융기관 | ○ |
| 소기업․중소기업 공제부금 | | | * 공제부금납입증명서 | | 중소기업중앙회 | ○ |
| 투자조합출자 | | | *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* 출자․투자확인서 | | 투자조합 및 증권투자위탁회사 (벤처기업 투자 등은 중소기업청) |  |
| 주택마련저축 | | | * 주민등록표등본 | | 정부24 (www.gov.kr)  또는 읍 ․ 면 ․ 동 주민센터 |  |
| *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| | 해당 금융기관 | ○ |
|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| | | 공통제출서류 |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| 본인이 직접 작성 |  |
| 신용카드 ․  체크카드 |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| 해당 금융기관 | ○ |
| 현금영수증 | 현금영수증 연간사용금액확인 |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| ○ |
| 우리사주조합  소득공제 | | | *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| | 우리사주조합 |  |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 목 | 제출서류 | | 발급기관 |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|
|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| *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| | 해당 금융기관 | ○ |
| 연금계좌세액공제 | 퇴직연금 | *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| 해당 금융기관 | ○ |
| 연금저축 | *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|
| 보험료 세액공제 | 보장성보험 | *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| 해당 금융기관 | ○ |
| 장애인전용 | *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|
| 의료비 세액공제 | 공통제출서류 | 의료비지급명세서 | 본인이 직접 작성 | ○ |
| 병원․ 약국 등에 지출한 의료비 | * 진료비(약제비)납입확인서 * 진료비 계산서․ 영수증 * 한방진료비계산서․ 영수증 * 약제비 계산서․ 영수증 등 | 해당 의료기관 |
| 장기요양급여비용  본인일부부담금 | *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*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| 해당 요양기관 |
| 의료용구 구입․ 임차비용 | * 의료비영수증   [(의사 처방전과 판매자(또는 임대인) 이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것)] | 해당 의료기관 및 판매자 ․ 임대인 |
| 안경, 콘택트렌 즈 구입비용 | * 영수증   (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 경사가 확인한 것) | 안경점 |
| 보청기, 장애인  보장구 구입비 | * 영수증   (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) | 판매자 |  |
| 난임시술비 | * 난임시술 의료비 지출영수증 | 해당 의료기관 |  |
| 교육비 세액공제 | 국내교육비 | * 교육비납입증명서 | 해당 교육기관 | ○ |
| * 교육비납입증명서(교복구입비) | 해당 판매점 |
| * 방과후학교 수업용도서구입증명서   (학교외 구입분) | 해당 교육기관 |  |
| * 교육비납입영수증(학원) | 해당 학원 | ○ |
| 장애인재활 특수교육비 | * 교육비납입증명서 | 해당 특수교육기관 |
| *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입증 서류 |
| 국외교육비 | * 교육비납입영수증 | 해당 교육기관 |  |
| * 유학중인 자녀가 유치원․ 초 ․ 중학   생인 경우(국내근무자에 한함) |  |
| - 국외유학인정서 | 국제교육원 등 |
| -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  실증명서 | 재외공관 |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항 목 | 제출서류 | | 발급기관 |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|
| 기부금공제 | 공통제출서류 | * 기부금명세서 | 본인이 직접 작성 |  |
| 정치자금 | * 정치자금ㆍ후원금 등 |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정당 등 | ○ |
|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| * 기부금확인서 |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단체의 장, 자원봉사센 터장 | ○ |
| 이외 기부금 | * 기부금영수증 | 해당 기부단체(또는 종교단체)  ✻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 증은 종교단체기부금에 한함 | ○ |
| *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 설립허가증 |  |
| 외국납부 세액공제 | *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* 외국납부세액영수증 | | 근로자 본인 |  |
|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| *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| | 근로자 본인 |  |
| * 미분양주택확인서 | | 시 ․ 군 ․ 구 또는 분양회사 |
| * 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| | 해당 금융기관 |
| * 매매계약서 사본 | | 근로자 본인 |
| * 건물등기부등본 | |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(www.iros.go.kr) |
| 월세 세액공제 | * 월세액·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·세액공제 명세서 | | 본인이 직접 작성 |  |
| * 임대차계약서 사본 *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서류 | | 근로자 본인 |

※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.

※ 아래의 자료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.

* 주민등록표등본 등 : 정부민원포털 민원24(www.minwon.go.kr)
* 건물등기부등본 :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
* 개별(공동)주택가격확인 :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[www.kreic.org/realtyprice)](http://www.kreic.org/realtyprice))
* 가족관계등록부 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